

『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
-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 -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 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 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 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
 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하게 규정하여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 -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 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 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 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
 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 개정안은 사용료의 반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제136조 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[개정 2012.3.21] [[시행일 2012.9.22]]

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[개정 2009.4.1]

제144조 (공공시설)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